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수신 학교법인 [redacted] 학원(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경유)

제목 소청심사 청구 결정 통지(2020-52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

1. 귀 기관 소속 [redacted] 대학교 조교수 [redacted] 이 제기한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2020. 4. 16. 불임의 결정서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게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결정서를 받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결정서는 관할청(「사립학교법」 제4조 등 참조)에도 통보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3. 이 결정에 대하여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소청심사 결정) ③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불임 결정서 1부. 끝.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주무관	전혜빈	사무관	김지애	심사과장	김효신	상임위원	이경희
위원장	2020. 4. 28. 서유미						
협조자							
시행	심사과-6476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6층 교원소청심사/ http://www.ace.go.kr 위원회 (어진동)					
전화번호	044-203-7424	팩스번호	044-868-8125	/ beenie19@korea.kr		/ 비공개(6)	



결 정 서

사 건 : 2020-52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 : [REDACTED]

소속 [REDACTED]대학교 직위 조교수

피청구인 : 학교법인 [REDACTED]학원

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변호사 강민정

심 사 일 : 2020. 4. 16.(출석)

결 정 일 : 2020. 4. 16.

피청구인이 2019. 12. 24. 청구인에게 한 재임용 거부 처분에 대해 청구인이 2020. 1. 20.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9. 12. 24. 청구인에게 한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 경과

가. 청구인은 2014. 3. 1. [REDACTED]대학교 영상디자인과 조교수(교육중점교원)로 신규 임용되었고, 2018. 3. 1. 재임용되었다.(임용기간: 2018. 3. 1.~2020. 2. 29., 2년)

나. 피청구인은 2019. 10. 7. 청구인에게 임용기간 만료예정 통지를 발송하였고, 같은 날 재임용 심사 자료를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9. 11. 20.과 12. 9. 각각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청구인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하였다(재임용 불가).

라. 피청구인은 2019. 12. 18. 이사회 의결을 거쳐 12. 24. 청구인에게 재임용 거부 처분을 하였다.

2. 처분 사유

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소 속	성 명	교육영역 평 가	학과·부서 평 가	학생 지도	교칙 준수	총 점 (합 계)	재임용 여부 (가/부)
		85점	10점	5점	(감점)	100점	
영상 디자인과	██████	56.62	8.4	9 (공모전 입상 가점 2점 취업가점 2점)	-4 (2019년 2차 전체 교수회의 불참 2018년 6차 전체 교수회의 불참)	70.02	부 (업적평가 점수 미달)

※ 재임용 요건 : 중점영역(교육영역, 연구영역, 산학협력영역, 취업영역) 60점 이상, 업적평가 합산점수 70점 이상

나. 비정년직(교육중점) 전임교원의 업적평가 배점구성 현황

직무 구분	영역구분	교육영역(85점)				학과 평가	학생 지도	교칙 준수	계 (100점)	비고
		강의계획	강의진행	강의결과	계					
교육 중점	평가배점	10점	감점 (최대 -10점)	75점	85점	10점	5점	감점 (최대 -10점)	100점	
	점수	8.08	-	48.54	56.62	8.4	9 (공모전 입상 가점 2점 취업가점 2점)	-4	70.02	
	○ 재임용 요건: 중점영역(교육영역, 연구영역, 산학협력영역, 취업영역) 60점 이상, 업적평가 합산점수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 교수업적평가 중점영역(교육영역) 평가 결과

구분	2018-1	2018-2	2019-1	강의 평가 합계	평균	교육영역(85점)				계 (85점)	비고	
						절대평가 (45점)	상대평가 (30점)	강의계획 (10점)	소계			

절대평가	81.25	76.15	86.17	243.57	81.19							중점 영역 (교육영역) 60점 이하
상대평가	상위 80% (12점)	하위 20% (6점)	상위 60% (18점)	36	12	36.54	12	8.08	56.62	56.62		

라. 강의계획 평가 결과(10점)

구분	교과목명				소계	평균	강의계획 계(10점)
2018-1	촬영조명(01)	촬영조명(02)	영상디자인 프로젝트(01)	고급촬영조명	328.2	82.05	8.21
	86.0	83.4	73.8	85.0			
2018-2	영상디자인 스튜디오(03)	영상촬영기법 (01)	영상촬영기법 (02)	자율연구	299.7	74.93	7.49
	73.8	72.8	84.5	68.6			
2019-1	촬영조명(01)	촬영조명(02)	필름스튜디오	고급촬영조명	341.8	85.45	8.55
	84.8	82.6	81.1	93.3			
계							8.08

3.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2018. 3. 1.자 재임용 심사를 받을 당시에는 관련 규정이 2017. 4. 1.자 기준의 규정이었으나, 2020. 3. 1.자 재임용 심사에서는 2018. 5. 1.자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이는 부당하다.

2018. 3. 23.자 교내 메일로 900페이지가 넘는 전체 규정집을 보낸 사실이 있지만 중요 규정의 변경사항에 대한 공지 없이 파일만 첨부되어 있었다.

청구인은 강의평가 평균 81.19점와 업적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규정개정 전에 해당 시 재임용 가능)임에도 불구하고 중점영역 60점 이하로 평가되어 재임용이 탈락되었는데 재임용 요건이 과중하게 변경된 것을 알려주지 않은 것은 재임용 대상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강의평가 평균점수 81.19점으로 이 점수는 수업평가 선택 항목 및 배점의 두 번째인 “그렇다” 구간에 해당하고 절대평가 기준에서 볼 때 결코 낮은 점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대평가 기준에서 상위 80% 구간 12점을 받은 것으로 상대평가 배점 방식에 따르면 수업평가 평균점수가 87점이라고 하더라도 상위 80% 구간에 속하게 되면 재임용 요건 점수인



60점에 미달한다. 또한 업적평가 대상기간은 매 학년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19학년도 2학기 수업평가를 반영하지 않았다.

4. 판단

가. 개정된 재임용 심사기준 적용의 적법성 여부

1) 관련 규정

<p>■ [redacted]대학교 교수업적평가규정</p> <p>제12조의2(비정년직 전임교원 업적평가) ⑥ 재임용 대상자는 중점영역(교육영역, 연구영역, 산학협력영역, 취업영역) 60점 이상, 업적평가 합산점수 70점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3. 5. 21./2014. 2. 25./2015. 9. 1./2017. 8. 7.)</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p> <p>② (경과조치) 2018학년도 비정년 전임교원 재임용 업적평가는 구 규정을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별표 2> 비정년 교육중점 전임교원 교육영역평가</p> <p>(개정 2013. 5. 21./2014. 2. 25./2015. 9. 1./2018. 3. 1.)</p>

2) 청구인은 2020. 3. 1.자 재임용 심사 시 적용된 규정은 2018. 5. 1.로 개정된 규정으로 이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학교에서는 2018. 3. 23.에 900페이지가 넘는 규정집을 메일로 송부하였고 해당 메일만으로는 재임용 평가기준이 변경된 것을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이 제출한 「[redacted]대학교 교수업적평가규정」 제12조의 2(비정년직 전임교원 업적평가) 제6항에 따르면 중점영역에서는 60점 이상, 업적평가 합산점수는 70점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규정은 2017. 8. 7. 개정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별표2> 비정년 교육중점 전임교원 교육영역평가는 2018. 3. 1. 개정된 사실이 있어 2020. 3. 1.자 재임용 심사 시에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해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피청구인

은 해당 규정을 개정한 후 교원에게 메일로 송부한 점, 설령 피청구인의 개정 규정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임용계약서에 「교원 인사규정」 제55조와 「교수업적평가규정」 제12조의2에 따라 재임용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 점, 만일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소관 부서에 현행 규정을 요청하였다면 당연히 이를 손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개정된 규정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 피청구인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보인다.

나. 재임용 심사 기준의 위법 여부

1) 청구인은 3개 학기 강의평가 평균점수가 81.19점으로 절대평가 기준으로 볼 때 결코 낮은 점수가 아님에도 상대평가 기준의 상위 80% 구간에 해당하여 중점영역 기준점수를 넘지 못하였고, 이러한 상대평가를 적용하는 해당 규정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법원은 “○○대학교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달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을 구별하여 임용된 것이고, 그에 따른 결과로 재임용의 기준 역시 달리 정할 수 있다(부산고등법원 2007. 12. 26. 선고 2007나11491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서 재임용 심의사유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해당 교원에게 사전에 심사방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사후에는 재임용 거부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재임용 심사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17403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교육중점교원에게 여타 전임교원과는 달리 양질의 교육을 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독려하기 위해 상대평가 등 별도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의 필요성 자체는 부정할 수 없고, 이러한 기준 자체가 과도하지 않은 경우라면 오히려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러나 교원의 개인적인 노력 여하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기 수강생들의 특성 또는 교원이 담당한 과목의 특성에 따라 점수의 편차가 많이 날 수 있다는 점이나, 평가대상자 외 다른 교원들의 성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대평가의 특성을 고려하면 강의평가 기준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거나 상대평가의 하위 구간에 점수를 지나치게 적게 배정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redacted]대학교 「교수업적평가 규정」 [별표 2]에 따르면 비정년직 전임교원의 업적평가 중 교육영역 85점은 강의계획(10점), 강의결과(75점), 강의진행(최대 -10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의결과 75점 중 절대평가 45점은 평가 대상 교원이 담당한 강의의 평균 수업평가 점수를 45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한편, 상대평가 30점은 전체 전임교원의 수업평가 점수 순위에 따른 백분율 구간에 따라 해당 교원이 해당하는 구간의 점수(상위 20% 이상: 30점 / 상위 40% 이상: 24점 / 상위 60% 이상: 18점 / 상위 80% 이상: 12점 / 하위 20% 미만: 6점)를 획득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강의계획은 강의평가 중 '강의계획 준수' 문항의 응답 점수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한 후 강의계획서 내 교원 연락처 기재, 학습계획 기재, 과제 부여 및 평가 방법 기재, 교재 및 수업자료 기재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항목만큼 감점하여 최종 점수를 도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체 전임교원의 강의 평가 점수와 각 교원의 순위(을 제10호증)를 기준으로 상위 60%의 한계선상에 있는 교원은 상대평가 점수(30점 만점)에서 60% 이상 구간은 18점을, 61% 이하 구간은 12점을 받게 되는데, ① 2018학년도 1학기의 경우 상위 60% 이상 구간에 놓인 교원(전○○)은 절대평가 점수가 37.14점¹⁾, 상대평가 점수가 18점, 강의계획서 평가 10점(10점 만점으로 가정)을 받아 총 65.14점으로 기준인 60점을 초과하는 반면에, 바로 아래 등수로 하위 61% 이하 구간에 놓인 교원(이○○)은 절대평가 점수가 37.04점, 상대평가 점수가 12점, 강의계획서 평가 10점을 받아 총 59.04점으로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사실, ② 2018학년도 2학기의 경우 상위 60% 이상 구간에 놓인 교원(정○○)은 절대평가 점수가

1) 100점 만점의 절대평가 점수를 45점 만점으로 환산하였으며, 이하 같다.

37.44점, 상대평가 점수가 18점, 강의계획서 평가 10점(10점 만점으로 가정)을 받아 총 65.44점으로 기준인 60점을 초과하는 반면에, 바로 아래 등수로 하위 61% 이하 구간에 놓인 교원(윤○○)은 절대평가 점수가 37.27점, 상대평가 점수가 12점, 강의계획서 평가 10점을 받아 총 59.27점으로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사실, ③ 2019학년도 1학기의 경우 상위 60% 이상 구간에 놓인 교원(정○○)은 절대평가 점수가 38.52점, 상대평가 점수가 18점, 강의계획서 평가 10점(10점 만점으로 가정)을 받아 총 66.52점으로 기준인 60점을 초과하고, 바로 아래 등수로 하위 60% 미만 구간에 놓인 교원(이○○)도 절대평가 점수가 38.48점, 상대평가 점수가 12점, 강의계획서 평가 10점을 받아 총 60.48점으로 기준을 초과하기는 하나 이는 강의계획서를 만점으로 가정할 경우에만 그러한 것이고, 절대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 중 83.80점을 득점한 교원(심○○)은 등수 54등(백분위 상위 68.35%)의 경우에도 총점 59.71점으로 기준인 60점에 미달하게 되는 사실, 나아가 ④ 청구인의 평가 대상 기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019학년도 2학기의 경우 상위 60% 이상 구간에 놓인 교원(박○○)은 절대평가 점수가 38.60점, 상대평가 점수가 18점, 강의계획서 평가 10점(10점 만점으로 가정)을 받아 총 66.60점으로 기준인 60점을 초과하고, 바로 아래 등수로 하위 60% 미만 구간에 놓인 교원(김○○)도 절대평가 점수가 38.57점, 상대평가 점수가 12점, 강의계획서 평가 10점을 받아 총 60.57점으로 기준을 초과하기는 하나 이는 강의계획서를 만점으로 가정할 경우에만 그러한 것이고, 절대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 중 84.39점을 득점한 교원(오○○)은 등수 53등(백분위 상위 67.95%)의 경우에도 총점 59.98점으로 기준인 60점에 미달하게 되는 사실이 확인된다.

마)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을 살펴보면 계원예술대학교의 비정년직 교육중점 전임교원에 대한 재임용 평가는 설령 강의계획 점수를 10점 만점으로 가정하더라도 매 학기 최소 하위 31.65%에서 최대 하위 40% 미만까지가 당연히 탈락하는 것으로 상대평가 점수 구간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산술적으로 평균할 경우 하위 35.30%의 교원이 본인의 노력 여하가 아닌 다른 교원과의 순위에 따라 자동적이고 일률적으로 기준에 미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피청구인이 제출한 2019. 3. 1.자 교육중점

교원 재임용 대상자 5명 중 2명, 즉 전체의 하위 40%가 재임용에 탈락한 것을 보아도 이러한 점이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특히 피청구인의 상대평가 점수는 5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최소 6점에서 최대 30점이 부여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구간이 충분히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각 구간별 배점의 차이가 상당하여 구간의 한계선상에 있는 교원의 경우 절대평가 점수는 큰 차이가 없음에도 상대평가 점수가 현저히 불합리하게 부여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규정은 교원의 노력 여하에도 불구하고 합리성을 결여한 상대평가 기준으로 인해 임용권자의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하는 수준에 이를 정도로 재임용이 거부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볼 것이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이 규정하고 있는 재임용 심사 기준은 대학 교원의 재임용 제도를 도입한 취지, 교육중점교원의 특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고려해 보더라도 교원의 재임용에 대한 기대권 및 교원지위법정주의에서 보장하는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 제도의 의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기준이고, 이러한 평정을 통해 재임용이 거부된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합리적인 기준을 통한 정당한 평정을 받을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5.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임용 거부 처분은 위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4. 16.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서유미 서유미

상임위원 이경희 이경희

위원 길인옥 길인옥

위원 김이경 김이경

위원 손종학 손종학

위원 오행자 오행자

위원 이종근 이종근

위원 정현미 정현미

위원 한범수 한범수



위 정본임.

2020. 4. 29.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